

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422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6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6. 16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('95.1.1법률제4828호) 규정에 의하여 '97.1.1 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
- 직속기관인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코자 관련 조문을 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농촌지도소 관장사무 규정(안 제2조)
 -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, 조정,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
 - 농촌생활개선사업, 농업경영개선 지도
 - 시설원예, 채소, 과수, 화훼, 특용 약용작물재배기술지도 등
- 지도소 업무수행을 위한 하부조직 규정(안 제4조)
 - 사회지도과, 기술보급과, 기술개발과, 읍면 농민상담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('95.1.1 법률제4828호) 규정에 의하여 '97.1.1 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코자 관련 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농촌지도소 기구조정 및 통폐합 건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께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는
- 답 : 상부의 지침도 있어 자체조정이 불가하나 기구조정 및 통폐합에 따른 작업은 신중히 하고 있음.
- 문 : 기구조정시 읍면 상담소장이 대부분 직급이 높은데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
- 답 : 심도있게 검토중임.

5. 토 론 : 없음.

6. 심사결과

- 1997. 6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